

6. 감사요령 :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, 건설국의 각과별로 1991. 4. 15. 이후의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, 서류 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## 7. 행정사항

가.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####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(증인)출석요구서

#### 마포구청장 귀하

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(증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서류 : 별첨

2. 출석일시 : 1993. 11. 30~12. 2 (3일간)

3. 출석장소 : 도시건설위원회실

4. 출석대상 : 도시정비국장(관계공무원), 건설국장(관계공무원), 필요시 동장.

5. 출석요구사유 :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견. 끝

#### 3. 관계법령

– 지방자치법 제50조

–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

##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1. 목적 : 서울특별시마포구의 “1994년도 예산(안)”과 “19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(안)” 및 “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(안)”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2. 위원수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7인으로 한다.

3. 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,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##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년 11월 22일

발의자 : 김종열의원의 7인

#### 1. 제안이유

– 서울특별시마포구의 1994년도 예산(안)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골자

–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: 17인  
–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